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 및
소음대책지역별 자금 조성 등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50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 정 호 의 원 대 표 발 의 (2201650)	1
Ⅰ . 제 안 경 위	1
Ⅱ . 제 안 이 유	1
Ⅲ . 주 요 내 용	2
Ⅳ . 검 토 의 건	4
1. 공 항 시 설 관 리 자 등 이 직 접 시 행 하 는 주 민 지 원 사 업 확 대 (안 제 18 조 제 5 항 단 서)	4
가. 개 정 안 의 내 용	4
나. 검 토 의 건	6
다. 관 계 기 관 의 건	8
1) 국 토 교 통 부	8
2) 한 국 공 항 공 사	8
2. 주 민 지 원 사 업 종 류 확 대 (안 제 19 조 및 제 19 조 의 2 신 설)	10
가. 개 정 안 의 내 용	10
나. 검 토 의 건	11
1) 주 민 지 원 사 업 으 로 의 료 사 업 및 건 강 증 진 사 업 명 시	11
2) 주 민 지 원 사 업 으 로 소 음 피 해 지 원 금 지 급 추 가	13
다. 관 계 기 관 의 건	19
1) 국 토 교 통 부	19
2) 한 국 공 항 공 사	20

3)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김해시	21
3.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22
가. 개정안의 내용	22
나. 검토의견	24
다. 정부 및 관계기관 의견	27
1) 국토교통부	27
2) 한국공항공사	28
4. 소음대책지역별 자금 조성·사용(안 제23조제2항)	29
가. 개정안의 내용	29
나. 검토의견	31
다. 정부 및 관계기관 의견	38
1) 국토교통부	38
2) 한국공항공사	39
3) 서울시 양천구	39
4) 경상남도 김해시	39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220165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3. 7. 1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각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조성한 자금은 통합적으로 운용·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군용비행장과 달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사업·건강증진사업 추진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은 487억원인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원에 불과하여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주민복지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 신설).

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단서).

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함(안 제19

조제2항).

라.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IV. 검토의견

1.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확대 (안 제18조제5항 단서)

가. 개정안의 내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공항소음 대책사업과 ②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②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공원 등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공용창고, 농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¹⁾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시장·군수·구청장(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
- 1)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7. 8. 9., 2023. 8. 16.>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경우 교육감)을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 수립 시에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시설관리자는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로서,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당되며, 사업시행자는 현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로서, 이 또한 양 공항공사가 해당됨.

지난 2023년 8월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단서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이루어지는 협의에 따라 양 공항공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략)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u>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u>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 -----.

현행	개정안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제18조제5항은 원칙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등과 시장·군수·구청장 간 협의를

통해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즉,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후 아파트 개·보수 및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지난 2021년 9월 한정된 시행주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²⁾이 발의되어 2023년 7월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³⁾되었고 2024년 2월 17일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접수받은 총 49건의 사업에 대하여 1차 서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456호,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본회의 의결)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 ----- ----- ----- -----,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 ----- ----- ----- -----,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

3)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역특산물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건강검진 등 문화복지사업 등을 예시하면서 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면심의 및 2차 대면심의를 거쳐 8월 사업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이러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통해 주민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제기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개정법률의 시행 추이 및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률을 개정·시행('24.2.)하였으므로 우선 입법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공모방식 시행의 근거가 삭제되어 다양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련 개선책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를 시행주체로 추가하여 공모사업을 추진 중('24.2.17. 시행)인바, 개정안은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감안할 때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주민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은 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및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주민복지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u>교육문화사업 등</u>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3. (생략) ② 3. (생략) <u><신설></u>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 1. ----- ----- <u>교육문화사업, 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및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등</u> ----- ----- -----. 2. 3. (현행과 같음) ② 3. (생략) <u>제19조의2(소음피해지원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소음피해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제외하고 소음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절차, 이의신청, 소멸시효, 환</u>

현행	개정안
	수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명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을 규정하고, 그 예시로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을 들고 있음.

개정안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들이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의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⁴⁾,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이미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력정밀검사,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등 건강증진·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4)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중 ‘그 밖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 지원비율이 65%이나, 개정안에 따라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이 명시되어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수행되는 경우 지원비율이 75%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추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소관으로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있음.⁵⁾

5) '97. 10월(15대 국회) 최초 의원발의안이 제출된 이래, 제19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적용범위, 보상금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음.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우선 법을 제정하고 추후 법 내용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19. 8. 21. 의원발의안과 정부 입장을 종합한 국방위원회 대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0.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9. 11. 26. 공포, '20. 11. 27. 부터 시행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항 등 소음피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군공항 등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2024.7월 기준) 】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 90미만(dB(C))	90이상 94미만(dB(C))	94 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 77미만(dB(A))	77이상 82미만(dB(A))	82 이상(dB(A))
보상금 (1인당)		월 3만원	월 4.5만원	월 6만원

* 비행장 3종 기타지역 :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택, 군산, 오산, 세종

* 상기 이외 비행장의 3종 구역은 배경소음도를 측정하여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이 “대도시 지역” 보다 크면 85웨클, ”기타지역“ 보다 작으면 80웨클 적용

자료: 국방부

반면, 민간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책은 ①사전적으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항공기소음감시센터 운영, 심야 항공기 운항 규제 등, ②사후적으로 소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택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전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민간공항의 소음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고 있음.⁶⁾

6) 2021.2. 김해공항 인근 주민(부산 만치마을)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85웨클 이상 소음발생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보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지급 금액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이며, 배상 지급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임)으로써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바 있음.

【 공항소음방지법 및 군소음보상법의 1인당 보상가액 비교 】

구 분	군소음방지법	공항소음방지법
목적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지원기준	85/80(대도시/기타도시) 웨클 이상 *소형/대형화기 사격장은 69/84dB	61LdendB 이상
지원내용	소음피해보상금	· 손실보상(건물철거·이전, 토지매수) · 소음대책사업(방음, 냉방, 전기료, TV수신료) ·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 소득증대 등) · 세금감면가능(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원	국비 100%	· 손실보상·소음대책사업 : 사업자 100% · 주민지원사업 : 사업자 75%, 지자체 25%
(민간) 항공기 통제	-	· 항공기의 소음저감운항절차 이행 의무화 ·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자료 : 국토교통부

민간공항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김포공항 소음에 대한 최초 소 제기 이후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총 7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17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약 93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음.

【 민간공항 소음 손해배상 소송 현황 】

판결	계	김포	김해	제주	인천	배상건
3심	14	11	2	1		김포 8건, 김해 2건, 제주 1건
2심	17	13	3	1		
1심	45	34	4	6	1	김해 1건, 제주 5건
합계	76	58	9	8	1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사업을 추가하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이의신청, 소멸시효, 환수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군
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공항 소음에 대해서도 금전보상 제도를 마련하
려는 것인데,

군공항 등의 경우에는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음에 관한 금전보상 제도가 마
련된 점, 공항소음은 청력 손상, 수면 방해, 정신적 고통 등의 신체적 피
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 하락 등 재산피해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⁷⁾,

판례가 공항소음 손해배상소송에서 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⁸⁾,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
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수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금전보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06호, 2016.6.14. 변재
일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5896호,
2016.6.16.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안번호 제2016133호, 2016.10.11.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p.17~18, 국회 국방위원회,
2016. 11.

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다만, 금전보상 제도의 도입에 앞서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의 수, 보상금 액수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부담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판례에 따른 소송 배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시 비용추계 결과 최대 매년 약 6억 3,5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⁹⁾.

【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제도 도입 시 비용추계 】

지역	기준금	감액적용 인정비율	인구(소음영향도 조사 기준)	연간 보상금
79LdendB 이상	월 60,000원	-	-	-
75~79LdendB	월 50,000원	17.5%	151명	15.9백만원/년
		47.5%		43.0백만원/년
70~75LdendB	월 30,000원	17.5%	3,464명	218.2백만원/년
		47.5%		592.3백만원/년
합계		17.5%	3,615명	234.1백만원/년
		47.5%		635.3백만원/년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민군겸용공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하는 군용비행장(김해공항 제외)¹⁰⁾에 해당되어 개정안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임.

9) 국토교통부는 2023년 종료된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으로 산출하였다는 설명임.

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먼저, 국토교통부는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으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다음으로 군소음보상법과 같이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주민지원사업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수준에 비해 현행법의 보상 수준이 낮지 않은 점, 소음피해지원금 추가 지급시 재원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시 타 사업(방음·냉방 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이나 주민지원사업 축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으로서의 소음피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항소음방지법 및 군소음보상법의 사업 비교 】

(단위 : 만원/연)

소음도	군소음보상법		공항소음방지법		비 고
	보상내용	가 액	사업내용	가 액	
95 웨클 (79Lden dB) 이상	소음피해 보상금	72	· 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58 (손실보상 미포함)	· 방음 : 33.3만원 (2,300만/30년/2.3) · 냉방 : 13.5만원 (310만/10년/2.3) · 전기료 : 8.7만원 (연 20만/2.3) · TV수신료 : 1.3만원 (연 3만/2.3) ·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 손실보상 : 감정평가에 따름
90~95 웨클 (75~79)		54			

소음도	군소음보상법		공항소음방지법		비 고
	보상내용	가 액	사업내용	가 액	
LdendB)					
85~90 웨클 (70~75 LdendB)		36			
80~85 웨클 (66~70 LdendB)		(도시 : 85, 농촌 : 80)	· 소음대책사업 · 주민지원사업	58	· 방음 : 33.3만원 (2,300만/30년/2.3) · 냉방 : 13.5만원 (310만/10년/2.3) · 전기료 : 8.7만원 (연 20만/2.3) · TV수신료 : 1.3만원 (연 3만/2.3) ·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75~80 웨클 (61~66 LdendB)	-	-			
70~75 웨클 (57~61 LdendB)	-	-	· 주민지원사업	1.3	· 주민지원사업 : 인당 연 1.3만원 수준

자료: 국토교통부

2) 한국공항공사

의료사업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통해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력검사, 보청기 지원 등이 시행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다음,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를 감안할 때 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이고, 민간공항의 경우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와 금전적 보상 성격의 전기료 지원 등 「군소음보상법」의 보상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소음대책을 시행 중으로 한정적인 소음대책 재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3)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김해시

현행법 제18조 2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안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음대책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양자의 범위가 상충하는바 소음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범위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거나,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소음대책사업에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3.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¹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살펴보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¹²⁾는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5%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¹³⁾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착륙료 수익의 75%)로 구성된 자금¹⁴⁾을 지원하여야 함.

11)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4)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조성 자금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조성한 자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10년간 동일한 수준(연 1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¹⁵⁾

개정안은 현재 시설관리자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사업비의 전부를 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민지원사업비 부담 >

현행	시설관리자 등 (양 공항공사) (75%)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시·군·구청장 등) (25%)
개정안	시설관리자 등 (양 공항공사) (100%)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생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생략)

15)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각 공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소음피해정도(면적, 거주인구), 소음영향요소(소음부담금과 운항편수)를 고려하여 배분산식 : $[(\text{면적} \times 0.37) + (\text{인구} \times 0.63) \times 0.6] + [(\text{소음부담금} \times 0.5) + (\text{운항편수} \times 0.5) \times 0.4]$ 로 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 ----- -----. ③ -----지원절차-----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각각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제23조, 1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제24조 17)를 적용하고 있음.

16)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조성된 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4조에 따른 자체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한국공항공사(시설관리자 등)가 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 75%의 범위 내에서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안 제19조제2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지원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는 시설관리자 등과 지

-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7)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전부를 한국공항공사(시설관리자 등)가 지원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의 운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됨.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구성된 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개정안과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시설관리자 등인 한국공항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비만큼 공항소음대책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주민지원사업 건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구조의 변경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 증가에 따른 변경 가능성 】

자금(재원) (법 제23조제1항)	지출(사업) (법 제23조제2항)		
국고지원금	공항소음대책사업 ↓	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소음부담금			주민지원사업 - 금액 ↑ - 건수 ↓
착륙료 수익의 75%	주민지원사업 ↑		

참고로, 현행 체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약 100억 원(75%) 시설관리자 등, 즉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을 때 약 1/3인 33억 원(25%)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모든 금액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①현행 주민지원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3억 원 정도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고, ②공항소음대책사업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건수를 그만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실적 】

구 분	'21년	'22년	'23년
주민지원사업 실적 (한국공항공사 부담액, 현 75%)	9,994백만원	9,993백만원	9,960백만원
지자체 부담액 25% 추정	3,331백만원	3,331백만원	3,320백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다. 정부 및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비율을 상향(75%→100%)하는 경우 타 사업(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이나 주민지원사업의 사업 수 축소 등으로 인해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존 지원비율의 확대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공모 등을 통해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증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축소와 사업 추진 건수가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또한,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바, 공항과 함께 지역이 상생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 분담비율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소음대책지역별 자금 조성·사용(안 제23조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시설관리자의 경우 착륙료 수입의 75%¹⁸⁾)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항(소음대책지역)의 구분 없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소음부담금 및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착륙료 수익의 75%)는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	제23조(자금) ① (현행과 같음)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u>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u> <u>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u>1. 공항소음대책사업</u> <u>2. 주민지원사업</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u> <u>-----.</u> <u>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u> <u>1. ~ 3. (현행과 같음)</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3조(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나. 검토의견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역별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자금 재원 체계를 살펴보면, 법 제23조제1항¹⁹⁾에 따라 현재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재원은 국고지원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²⁰⁾은 동법 시행령 제3조²¹⁾에 따라 공항별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 12. 31.>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소음대책사업 물량 및 사업 우선순위(소음영향도가 높은 순)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²²⁾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사업(국고 75%, 지방비 25%)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행과 같이 재원을 통일적으로 마련하여 사업간, 공항별로 배분할 경우 전체 소음대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기여도가 높은 지역과 사업 수혜 지역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재원과 사업 수혜의 관계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공항별 자금 조성 및 사업비 집행 현황(2018~2023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항별 자금 조성 (백만원)						
①소음부담금						
김포공항	3,743	3,886	1,927	1,575	1,847	2,878
김해공항	3,082	3,157	952	511	796	1,697
제주공항	2,435	2,597	1,757	1,742	1,926	1,974
울산공항	42	35	32	46	39	19
여수공항	33	35	45	64	56	34
소계	9,335	9,710	4,713	3,938	4,664	6,602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의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의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22)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설치 등의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②착륙료 75%						
김포공항	18,905	19,417	8,061	7,757	8,952	15,443
김해공항	14,664	14,860	3,553	2,729	3,851	9,755
제주공항	11,499	12,751	7,563	8,298	9,073	10,622
울산공항	79	149	74	111	191	104
여수공항	91	94	66	106	174	166
소계	9,302	47,271	19,317	19,001	22,241	36,090
합계(①+②, A)						
김포공항	22,648	23,303	9,988	9,332	10,799	18,321
김해공항	17,746	18,017	4,505	3,240	4,647	11,452
제주공항	13,934	15,348	9,320	10,040	10,999	12,596
울산공항	121	184	106	157	230	123
여수공항	124	129	111	170	230	200
총계	54,573	56,981	24,030	22,939	26,905	42,692
공항별 사업비 집행 금액(B) (백만원)						
김포공항	45,992	50,781	51,778	39,718	29,788	31,902
김해공항	4,910	2,228	2,207	2,965	2,803	3,172
제주공항	12,140	19,488	14,727	10,997	10,744	8,008
울산공항	195	171	147	159	151	119
여수공항	119	119	113	98	99	99
소계	63,356	72,787	68,972	53,937	43,585	43,300
공항별 자금 조성액 대비 사업비 집행 비율(C = B/A, %)						
김포공항	203%	218%	518%	426%	276%	174%
김해공항	28%	12%	49%	92%	60%	28%
제주공항	87%	127%	158%	110%	98%	64%
울산공항	161%	93%	139%	101%	66%	97%
여수공항	96%	92%	102%	58%	43%	50%

자료 :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공항별 자금 조성액 대비 해당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율을 살펴보면 김해공항은 12~92%로 낮지만, 김포공항은 174~518% 수준으로 높은 실정인바, 이에 개정안은 재원기여도와 사업 수혜도를 최대한 비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

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조성된 자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먼저, 법 제23조²³⁾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은 주로 소음부담금 및 착륙료 수익 등인데²⁴⁾, 소음 부담금과 착륙료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임.²⁵⁾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피해를 입힌만큼 소음부담금과 착륙료가 징수되어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24)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재원으로 국고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이전에는 소음 부담금(2호)과 착륙료 수익의 일부(3호)만으로 자금을 조성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금 조성에 곤란이 발생하자 국고지원금이 지원되었음.

2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조성된 자금의 5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에 상응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더 많은 항공기의 운항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 기대됨.

또한,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될 자금의 비율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성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에 조성된 자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될 자금의 비율이 법정화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가 법률로 지정됨에 따라 보다 필요한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동 사업들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항별로 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수와 그에 따른 1인당 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자금 조성액 대비 사업비 집행 비율이 낮은 공항이라 하더라도 1인당 사업비는 오히려 많고, 그 비율이 높은 공항이 1인당 사업비는 적은 점을 알 수 있음.

【 공항별 사업대상 인구 수 및 1인당 사업비(2018~2023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수 (명)						
김포공항	184,978	184,978	184,978	184,978	184,978	182,983
김해공항	3,641	3,641	3,641	2,519	2,519	3,891
제주공항	22,805	22,805	22,805	22,805	22,805	31,207
울산공항	372	372	372	372	372	4
여수공항	8	8	8	8	8	7
소계	211,804	211,804	211,804	210,682	210,682	218,959
1인당 사업비 (만원)						
김포공항	25	27	28	21	16	17
김해공항	135	61	61	118	111	82
제주공항	53	85	65	48	47	26
울산공항	52	46	40	43	41	2,975
여수공항	1,488	1,488	1,413	1,225	1,238	1,414

자료 : 국토교통부

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별 소음대책사업비 배분은 전기료, TV 수신료 등 필수비용을 우선 배정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전년도 신청 수량과 당해연도 신청 예상수량을 고려하여 공항별로 조정하여 배분하는 등 각 공항별 수요(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되는 것임.

이에 개정안에 따라 자금 조성액 대비 사업비 집행 비율이 가장 낮은 김해공항의 비율을 50%로 고정시키고, 김해공항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비율이 가장 높은 김포공항에 대한 사업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각 공항의 자금조성액, 사업비 집행액, 1인당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자금조성액 (김포공항, 김해공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김포공항	22,648	23,303
김해공항	17,746	18,017

【 실제 사업비 및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김포공항, 김해공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	구 분	2018년	2019년
김포공항	45,992	50,781		김포공항	42,029	44,000
김해공항	4,910	2,228		김해공항	8,873	9,009

**【 실제 1인당 사업비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사업비
(김포공항, 김해공항) 】**

(단위 : 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	구 분	2018년	2019년
김포공항	24.9	27.5		김포공항	22.7	23.8
김해공항	134.9	61.2		김해공항	243.7	247.4

즉,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1인당 사업비의 차이가 더욱 심해져 지역 간, 주민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조성된 자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금 조성방식에 따른 개정안의 당위성, 사업에 사용될 자금의 비율을 법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성 제고 가능성과 효율성 및 탄력성의 저하 가능성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간 형평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이익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359호, 2023.9.11.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다. 정부 및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공항별로 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경우 피해 주민간 지원액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 또는 사업 불균형이 우려됨. 현 지원 체계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체감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지역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고 균형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공항별로 재원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이 달라 지역별 격차 및 사업 불균형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2) 한국공항공사

공항에 따라 소음대책 사업대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원을 공항별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사용할 경우 사업추진의 불균형 및 소음대책 대상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은 각 공항별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의 수입 총합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구조로 공항별 시설설치 사업의 진척도, 비용지원 사업의 규모 등 전국 단위로 형평성 있는 소음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3) 서울시 양천구

공항 주변 여건,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인구수가 공항별로 6~47배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음부담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사용 시 사업 불균형 발생이 우려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4) 경상남도 김해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